발간등록번호
11-1790365-000021-0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발간등록번호
11-1790365-000021-01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

CONTENTS

I 개요 _ 4

II 경품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_ 5

III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_ 6

1. 행사 기획·공지 단계 6
2.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10
3. 경품 발송 단계 12
4. 행사 종료 단계 15

IV 활용 안내사항 _ 17

[붙임 1]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점검표 18
[붙임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문 19

I 개요

1. 필요성

◆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 등 온라인 경품행사 시 참여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

* 행사 계정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미당첨자의 연락처·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개인 식별 등

◆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안내 필요

- 행사 운영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원칙 및 법규 안내
  -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

2.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SNS 등 온라인 경품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 경품행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보호법 제2조제5호)

◆ 적용범위 : 행사 기획·공지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 과정

① 행사 기획·공지 단계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기획,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②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 시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③ 경품 발송 단계 : 당첨자에 한하여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금지

④ 행사 종료 단계 :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

II 경품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1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보호법 제16조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2항)
  - **당초 수집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보호법 제18조제1항)
  -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제1항)

-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4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5항)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보호법 제26조제1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보호법 제3조제6항)

III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1. 행사 기획·공지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행사 기획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기획
- 행사 공지 : 경품행사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 개인정보 침해 사례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행사 기획

① **행사 운영 계정을 사칭**하여 **당첨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 **참여자의 ID 등이 일반에 공개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 행사를 운영하는 SNS 계정 **팔로우**, 퀴즈 정답·응원 문구 등을 **댓글로 작성**, 참여자의 SNS에 사진 등을 게시한 후 운영자가 제시한 **해시태그 추가** 등

준수사항 **비밀댓글 기능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ID 공개를 차단하되,**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예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개별 메시지 등을 받으셨다면 정식 계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 사칭계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 유도 주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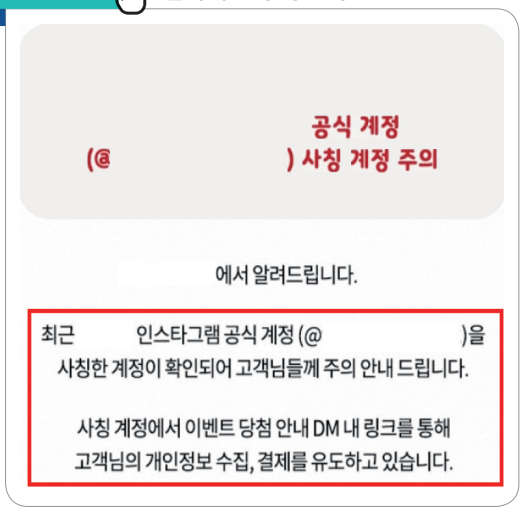

좋은 사례 비밀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 ID 공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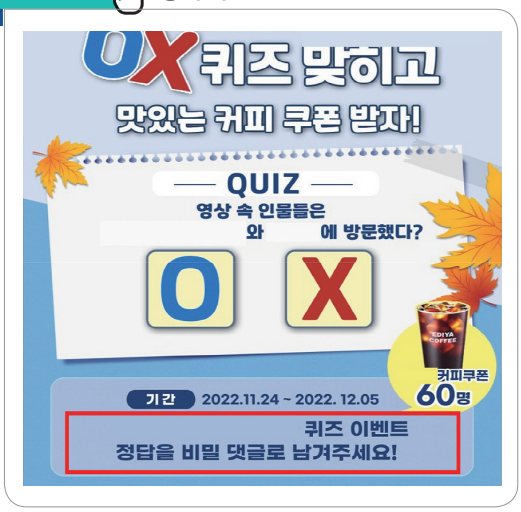

②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성명·연락처 등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 **개별 메시지(Direct Message)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참여 인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품행사 유형**에서 발생 가능

준수사항 제출 양식에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제외**

-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된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않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집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됨**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여야 함

잘못된 사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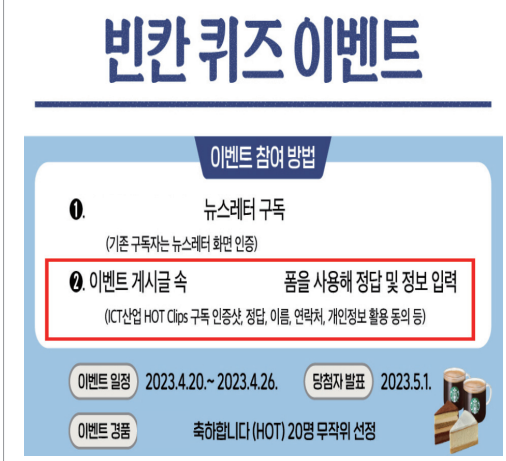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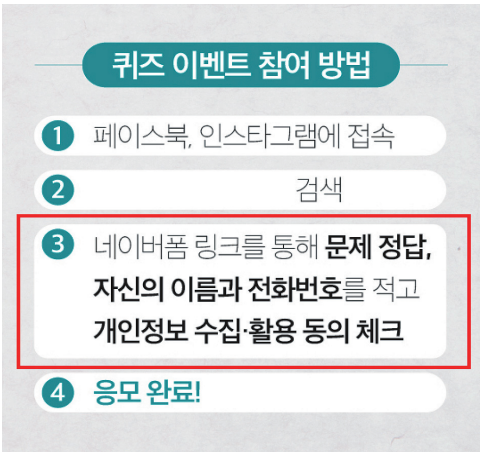

③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당첨자가 식별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사례

– **당첨자 전체 명단을 발표**하는 경품행사 시 발생 가능

※ 실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SNS의 경우 당첨자의 실명이 발표될 수 있음

준수사항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되,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당첨자 추첨·발표 부분 참조

좋은 사례 **개별 메시지를 통한 당첨자 발표**

경품행사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 **경품행사 공지 시** : 개인정보 수집 **시점** 및 **대상***을 안내

  * (예시)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시점*** 등을 안내

  * (예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이용되며,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 및 근거 법령(소득세법 등) 안내**

[참고]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보호법 제26조)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② 위탁내용·수탁자 등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단순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당첨자의 동의 불필요

* (안내 예시) 경품 발송을 000업체에 위탁하며,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예시① | **경품행사 공지**(참여 여부가 공개되는 유형)

◈ **참여 방법 :** 팔로우, 댓글 작성, 해시태그 추가 등
◈ **참여 기간 :** 0월 00일 ~ 0월 00일
◈ **경　　품 :** 모바일 쿠폰 00명 / 실물 00명
◈ **당첨자 발표 :**
- 일　시 : 0월 00일
- 방　법 : 개별메시지 전송 또는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

* 사칭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련 개별 메시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정식 계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 계정은 행사 운영을 위해 카드 등록 및 결제 관련 정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예시② | **경품행사 공지**(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는 유형)

◈ **참여 방법 :** 인증자료 등을 개별 메시지 또는 별도 양식으로 제출
◈ **참여 기간 :** 0월 00일 ~ 0월 00일
◈ **경　　품 :** 모바일 쿠폰 00명 / 실물 00명
◈ **당첨자 발표 :**
- 일시 : 0월 00일
- 방법 : 개별메시지 전송 또는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

* 참여자 식별을 위한 SNS ID 외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합니다.

2.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당첨자 추첨 : 취급자 최소화, 미당첨자의 개인정보 지체 없이 파기
- 당첨자 발표 : 개별 안내 원칙, 전체 명단 발표 시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처리

당첨자 추첨

- 추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취급자 제한**
- **더 이상 행사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개별 메시지 또는 별도 양식을 통해 제출한 미당첨자의 참여 인증자료, SNS ID 등을 추첨 완료 후 지체 없이 삭제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전체 명단을 발표하지 않아도 행사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 발표할 필요가 없을 시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행사의 투명성 확보 등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 (예시①) ID의 끝 3문자(chppe***) 또는 중간(c*pp*ac*)을 처리
(예시②) 참여자의 응모 댓글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당첨자 추첨·발표
※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별다른 처리 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발표되지 않도록** 유의

[처분사례] 개인정보위 의결(제2022-016-133호)

경품행사 당첨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당첨자(102명)가 아닌 전체 참여자(2,326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별다른 처리 없이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300만원) 부과**

좋은 사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후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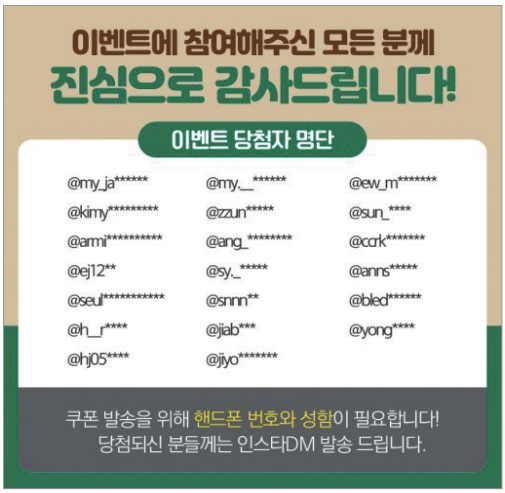

▲ 아이디 일부를 삭제

▲ 응모시간을 추첨·발표에 이용

잘못된 사례 별다른 처리 없이 당첨자 발표

3. 경품 발송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당첨자에 한하여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이용(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 **(시점)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메시지 발송, 비밀댓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잘못된 사례 **행사 기획·공지 시부터 미리 수집한 연락처로 경품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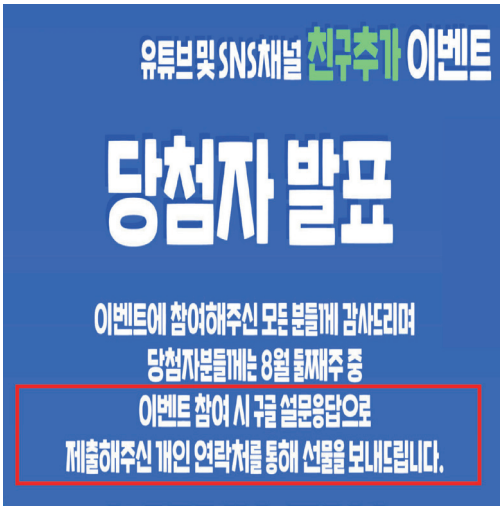

● **(항목)** 경품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보호법 제16조)

① **(종류)** 모바일 쿠폰 : **연락처, 성명**(발송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실물 : **성명, 연락처, 주소**

② **(금액)** 5만원을 초과하여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가능**하며(보호법 제24조의2), 수집 시 **법적 근거* 명시**

* 예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잘못된 사례 **5만원 이하 경품임에도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경품 당첨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달라는 업체들…"세무서 탓이다(?)"

승인 2022.09.06 08:38

업체들, 세무서가 자료소명 요청…5만이하 경품 당첨자도 '주민번호' 요구

5만원 이하 경품은 '비과세' 대상…주민번호 요구는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

업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요구받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야

업체 "주민번호 요구하는 세무서 탓" vs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책임"

● **(방법)** 당첨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첨자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다만, 당첨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000 경품행사 당첨을 축하합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모바일 쿠폰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경품 발송	연락처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시

■ (실물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경품 발송	성명, 연락처, 주소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시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에만 이용되며,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탁하는 경우 〉
※ 경품 발송을 000업체(대표전화 000-000-0000)에 위탁하며,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인 경우) **기타 고지사항** 〉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제세공과금 납부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경품행사 운영자 -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함(보호법 제18조)
  - 마케팅 등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4. 행사 종료 단계

행사 기획·공지 → 당첨자 추첨·발표 → 경품 발송 → **행사 종료**

[주요 점검 사항]

- 경품 발송 완료 등 행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 발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파기 여부도 확인

행사 종료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보호법 제21조)

-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 당첨자의 경품 수신 여부 확인 및 관련 문의 응대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경품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도 확인**

좋은 사례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사실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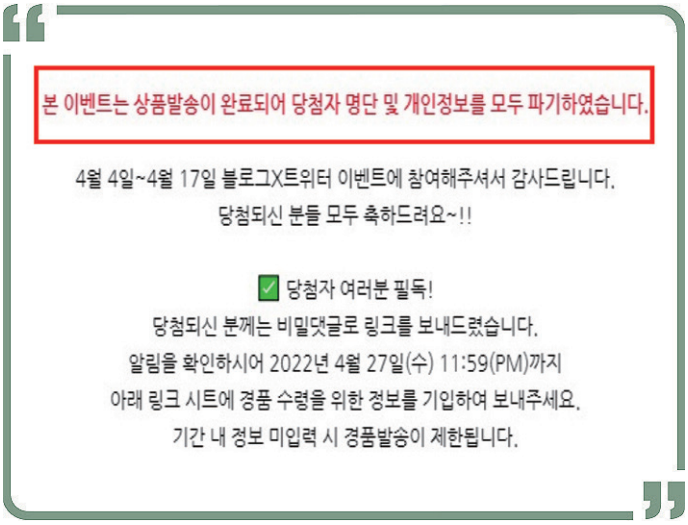

주요 QnA

Q1 **경품행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복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행사 공지 시 참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수집해도 되나요?**

→ 온라인 경품행사 시 ID로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름이나 연락처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2 **행사를 진행하는 SNS에 비밀댓글 기능이 없거나, 하루에 개별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등 개별 메시지를 통해 당첨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체 명단을 발표해도 되나요?**

→ 가급적 개별메시지를 통한 발표가 바람직하나, 당첨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3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더라도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여 발표 시 사용해도 되나요?(예: 홍*동, 1**4)**

→ 연락처를 미리 수집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명단 발표와 함께 비밀댓글 또는 개별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하여 당첨 여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Q4 **경품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첨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개인정보 수집 시, '네/아니오' 형식으로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 당첨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당첨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항목, 보유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의 내용을 당첨자에게 안내 후 수집하여야 합니다.

Ⅳ 활용 안내사항

1. 본 가이드라인은 SNS 등 온라인으로 경품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홍보 등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은 관련 법령·고시의 세부 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고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고

   ** 해설서·가이드라인·안내서 등 : 아래 웹사이트 참고

3.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질의 및 본 가이드라인 관련 상담, 기타 문의사항은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최신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붙임 1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처리 점검표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점검 사항	점검 여부	경품행사 단계
수집	①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 행사 기획·공지 단계에서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	행사 기획·공지, 경품 발송
	②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나요?** - 모바일 쿠폰은 연락처만 수집, 실물은 성명·연락처·주소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며 법적 근거 명시	□	경품 발송
	③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항목 등을 안내하나요?** -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나,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	경품 발송
이용	① **참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나요?** - 개인정보 침해사례별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기획 등	□	행사 기획·공지
	② **당첨자 명단 발표 시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하나요?** - 담당자 실수 등으로 당첨자 명단을 별다른 처리 없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	□	당첨자 추첨·발표
	③ **개인정보를 경품 발송에만 이용하나요?** - 마케팅 등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	경품 발송
	④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사항을 준수하나요?** - 위탁 시 문서에 의하며, 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여야 함	□	경품 발송
파기	● **행사 종료 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나요?** - 발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도 확인	□	행사 종료

붙임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조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3. 9. 15 시행 예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9. 15.]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온라인 경품행사편 -

발 행 : 2023년 5월

인 쇄 : 2023년 5월

발행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

인쇄처 : 호정씨앤피(Tel. 02-2277-4718)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